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7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 윤준병 • 민형배 • 박민규

이성윤 • 이춘석 • 박희승

허종식 · 서영교 · 서삼석

문정복 · 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10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 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	
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1. 1명인 경우: 연 <u>15만원</u>	15 <u>0만원</u>
2. 2명인 경우: 연 <u>35만원</u>	2 <u>100</u> 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u>35만원</u>	3 <u>100만</u>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u>위</u>
<u>30만원</u> 을 합한 금액	<u>100</u> 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	③
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1
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민	원

-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연 <u>50만원</u>
-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우: 연 <u>70만원</u>
- ④ (생 략)

<u>100만원</u>
2
<u>150만원</u>
3
<u>200만원</u>
④ (현행과 같음)